

문서번호	디자인건축 과-7256	★주무관	청사관리팀장	디자인건축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3.7.	호은성	권종출	유형우	이동일	하철승	03/07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(안) 검토

2016.3.2.

강 북 구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(안) 검토

이용균의원 외 7인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(안)」 제정에 대하여 국회 및 타 시군구 사례를 기초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함.

## I 조례(안) 개요

-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(안)
- 발의일자 : 2015. 11. 23.
- 발 의 자 : 이용균 의원 외 7인
- 제안이유 :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- 검토의견 : 조례(안) 수용

## II 주 요 내 용

-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6조)
-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,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 ~ 안 제9조)

### III

## 조례(안) 검토

#### □ 상위법 및 타 시군구 제정 · 시행 현황

##### ○ 국회 : 상위법 없음 (발의법안 폐기)

- 2015.9.11일자 국회에서 ‘범죄예방기본법안’이 발의되었으나 제338회 국회임시회(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범안심사소위원회, 2016.01.06)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안 폐기됨.

##### ○ 서울시 :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공포(2016.01.07)

##### ○ 기타 지자체

- 서울시의 경우 동작구, 송파구, 성북구 등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 시행중이며, 기타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양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기 제정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. (약 46개 시군구)

#### □ 조례(안) 내용 검토

##### ○ 국회 발의법안 내용 : 지자체의 조례안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

-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업적 범죄예방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(안 제5조)
-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민·관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범죄 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(안 제6조).
-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고, 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범죄예방강화구역의 지정·관리, 위해에 대한 예보·경보 및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).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·교통안전·학교폭력 및 청소년계도활동 등을 수행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을 활성화하고, 이들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협력적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○ 서울특별시 조례내용 검토

-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**우리구 조례(안)**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.
-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(시장의 책무)의 경우 서울시 외에 공공기관, **자치구** 및 기업 등에 관련 시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(시장의 책무)

-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는 공공기관,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IV

**주관부서 종합의견**

- 국회에서 추진하던 ‘범죄예방기본법안’은 기존 제정조례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, 현재 미 제정된 상태임.
- 상위법 제정이 언제 이루어 질 지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시달되는 서울시 시책들을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, **우리구 만의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강북구 조례를 선 제정** 하고 이후 상위법이 제정되면 공포법안을 기준으로 구조례 개정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별첨 : 조례안 1부. 끝.